

'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

연번	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1	I. 사업개요 3. 사업개요 ○ 공급규모 : 1,000억원(이차보전 <u>5,372백만원</u>) - 어가(법인) 당 최대 지원한도 <u>2억원</u>	I. 사업개요 3. 사업개요 ○ 공급규모 : 1,000억원(이차보전 <u>6,988백만원</u>) - 어가(법인) 당 최대 지원한도 <u>3억원</u>	○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으로 어가 당 지원한도 증액(2→3억원) - 금리 인상 및 상환 유예를 위한 '23년 이차보전 예산 증액
2	II. 사업시행 주요 내용 2. 사업자 선정 ○ 사업자 순위 내 경합 시 - <u>2019~2021년</u> 사업 참여자 * '19~'21년 대출금액을 소진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한도 내에서 <u>소진한 금액 대비 120%까지</u> 선정할 것('19~'20년 중복 미소진자는 2개년도 평균 금액 적용). ○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-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부정행위자(<u>최근 2년간</u>) - (<u>신설</u>)	II. 사업시행 주요 내용 2. 사업자 선정 ○ 사업자 순위 내 경합 시 - <u>2020~2022년</u> 사업 참여자 * '20~'22년 대출금액을 소진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한도 내(3억원)에서 <u>사업참여 연도별 소진한 금액 중 높은 금액 대비 120%까지</u> 선정할 것('20~'21년 중복 미소진자는 2개년도 평균 금액 적용) ○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-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부정행위자(<u>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2년간</u>) - <u>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</u> (<u>당해연도 사업신청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</u>)	○ 기 대출금액을 소진하지 않고 비연속적으로 참여한 사업자의 대출금액 선정 기준 마련 ○ 부정행위자 적용 기준 명확화 및 위약금 미납한 자의 사업 신청 제한

연번	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3	3. 대출실행 및 사업비 집행 ○ 대출실행 기간 - 추가대출은 잔여 용자액 규모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및 해양수산부(필요한 경우 시·도 포함)가 협의하여 실행여부를 결정하여 별도 통지 * (<u>신설</u>) ○ 대출 유의사항 -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는 대출실행 추이에 따라 잔여 용자액이 예상되거나 대출실행 완료 후 잔여 용자액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신속하게 협의하여 추가 대출(미대출자 또는 신규사업자 등)을 실시함 * (<u>생략</u>) ** (<u>신설</u>) ○ 사업자 준수사항 - 배합사료 구매기간(사후 관리기간) : 대출 실행일 이후 1년까지 * (<u>신설</u>)	3. 대출실행 및 사업비 집행 ○ 대출실행 기간 - 추가대출은 잔여 용자액 규모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및 해양수산부(필요한 경우 시·도 포함)가 협의하여 실행여부를 결정하여 별도 통지 * <u>추가대출 사업자선정 시, 기존 사업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</u> ○ 대출 유의사항 -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는 대출실행 추이에 따라 잔여 용자액이 예상되거나 대출실행 완료 후 잔여 용자액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신속하게 협의하여 추가 대출(미대출자 또는 신규사업자 등)을 실시함 * (<u>생략</u>) ** <u>대출기한 내 미대출자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며, 추가대출 신청 시 후순위로 선정될 수 있음</u> ○ 사업자 준수사항 - 배합사료 구매기간(사후 관리기간) : 대출 실행일 이후 1년까지 * <u>대출실행 후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사후 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되며, 추후 사업자 우선 순위 선정 시,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. 또한, 기 지급된 대출금에 대한 배합사료 구매실적 증빙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</u>	○ 추가대출 실시 절차 마련 ○ 기존 대출기한 내 미대출자가 추가대출 신청할 경우 선정기준 명시 ○ 대출실행 후 사업 도중 일시 상환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

연번	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4	4. 사후관리 ○ 점검 유의사항 - 대출 실행 후 사후관리 기간에 대한 배합사료 구매실적 자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기 지급된 대출금 중 실적 미제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실적 부족금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할 것 이 경우 사업자가 자격박탈 대상자(부당사용자)인지 정당한 사유에 따른 사업비 환수대상자(정상사업자)인지 여부를 <u>구분하여 통보</u>하여야 함 * 정상사업자는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태풍, 해일, 적조,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며, 위약금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	4. 사후관리 ○ 점검 유의사항 - 대출 실행 후 사후관리 기간에 대한 배합사료 구매실적 자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기 지급된 대출금 중 실적 미제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실적 부족금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할 것 이 경우 사업자가 자격박탈 대상자(부당사용자)인지 정당한 사유에 따른 사업비 환수대상자(정상사업자)인지 여부를 <u>구분하여 통보</u>하여야 함 * <u>각 시도(시·군·구)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</u> 태풍, 해일, 적조,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<u>정상사업자로 심의의결하며</u>, 위약금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	○ 기 지급된 대출금의 실적 미제출 금액에 대한 사업비 환수대상자 구분기준 명확화